

2026년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 표준계약서

가공용 농산물의 구매자_____ (식품·외식업체)와 생산자_____ (농업인, 생산자단체)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계약의 목적 및 상생협력)

- ① 본 계약은 가공용 농산물의 생산자가 가공용 농산물을 구매자에게 매도하고,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제반사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구매자와 생산자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상생협력을 위하여 계약재배를 수행하며, 궁극적으로는 장기 계약재배를 추구한다.

제 2 조 (계약재배)

생산자와 구매자가 상호협의를 의해 선정한 아래 주소를 계약재배지로 하며, 재배지가 여러 곳일 경우 [별첨1]문서에 기재된 주소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
구분	주소	면적(m ²)
계약재배지(1)	____도 ____ (시)군 ____ (읍·면)동 ____ 리 ____ 번지	
계약재배지(2)	____도 ____ (시)군 ____ (읍·면)동 ____ 리 ____ 번지	

* 계약재배지 별첨문서는 계약서 맨 뒤에 첨부

제 3 조 (계약재배 농산물)

품목	품종	가공용 농산물 규격 및 품질요건
예시 : 고구마	고건미	8~10cm 부패, 기형, 충해, 절상, 열גע 등의 이상이 없을 것

제 4 조 (규격 및 물품대금)

규격	계약단가(원/kg) (A)	물량(kg) (B)	총 물품대금(원) (A×B)
____ 이상			
____ 이하			

- ① 실제 물품대금은 계약단가(A)에 물량(B)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물량(B)은 구매자가 구매하여야 하는 양으로 실제 구매지는 위 물량을 계약기간 내 구매해야한다.
- ③ 작황부진 또는 호조에 따라 공급물량이 (예시 : ±15%) 변동하는 경우, 상호간 합의를 통해 물량 및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

제 5 조 (계약기간)

-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아래의 계약기간과 같이 (0000년 00월 00일~ 00월 00일)로 한다.
② 수확기간과 납품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, 구매자와 생산자는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계약기간	수확기간	납품시기
20XX.04.03.~20XX.12.31	20XX.10~11월 중순	20XX.11~12월 말

제 6 조 (가공용 농산물 공급)

- ① 생산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장소에 계약재배 농산물을 공급한다.

공급(납품)장소	포장방법	포장단위	비고(인도방법)
00식품 △△공장	pp박스	20kg	납품장소까지 상차운반

- ② 구매자는 생산자의 가공용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.
③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을 위한 운반비용은 (예시: 생산자 또는 공급자)가 부담한다.

제 7 조 (계약금)

- ① 구매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대금의 (예시: 10~20 %)인 (0000원)을 계약금으로 하여, 계약체결 후 (예시 : 7일) 이내인 (0000년 00년 00일)까지 생산자에게 지급한다.
② 계약금 지급은 구매자가 아래의 생산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.

은행명	예금주	계좌번호	비고

- ③ 단, 구매자가 계약금을 종자로 지급할 경우, 상호간의 협의된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
계약금 지급 방법	공급종자 단가(원/kg) (A)	공급 종자 물량(kg) (B)	계약금액 (A×B)	비고
종자지급	000원	000kg	0000원	

제 8 조 (중도금 및 잔금)

- ① 중도금 및 잔금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, 잔금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거래명세서 교부와 함께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.

구분	비율	금액	지불시점	비고
계약금	10%	000원	20XX.00월00일	-
중도금	30%	000원	20XX.00월00일	생략가능
잔금	60%	000원	20XX.00월00일	거래명세서 발행 후 지급
합계	100%	000원	-	-

- ②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은 계약금 입금계좌와 동일하며,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체일만큼 계약시점의 한국은행 기본금리(0.0%)에 (예시 : 1~3%)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제 9 조 (계약의 해지)

① 생산자의 귀책사유가 아래와 같을 경우, 구매자는 서면으로 최고(독촉) 후 (예시 : 5)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때 생산자는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.

1. 생산자가 계약재배 농산물을 구매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판매 혹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2. 생산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물품공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3. 기타 생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매자가 판단한 경우

②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기 전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거절을 통보할 경우, 생산자는 서면으로 최고(독촉) 후 (예시 : 5)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계약해지 통보 후 구매자는 계약재배 농산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고 생산자는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. 단 이는 양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하다.

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상대방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시작되며, 위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최고(독촉)를 해지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 10 조 (불가항력)

천재지변, 자연재해,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.

제 11 조 (위약금)

① 제 9조에 의거,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 주체 중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위약금은 제7조 계약금의 (예시 : 20~50) %로 정하도록 한다.

제 12 조 (소송의 관할법원)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생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 13 조 (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)

① 「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」이란 구매자가 물품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생산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.

②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, 생산자에게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계약이행 보증보험)

① 「계약이행 보증보험」이란 생산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.

② 생산자는 본계약에 따른 농산물공급을 담보하기 위하여, 구매자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기타)

상기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약정한다.

예시)

1. 재배방법

2. 검수규정

3. 인센티브 및 패널티

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
구매자와 생산자 쌍방의 서명(또는 날인)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-----년 --월 --일

구매자	주 소 :
(식품·외식업체)	성 명 : (인) 연락처
생산자	주 소 :
(생산자(단체))	성 명 : (인) 연락처